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1. 8 선고 2024가단5293682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0. 11.

판결 선고2024. 11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76,382,178원 및 그중 43,843,491원에 대하여 2024. 6. 5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, 83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C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건설기계를 구입하면서 원고로부터 8,300만 원을 대출받았고,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최고액을 8,3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.

1	볼보 25.5톤 덤프트럭	D	2008	D	2016.11.28.	2021.12.10.	연11.9%	연14.9%	원리금균등 분할상환
---	------------------	---	------	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

나. 위 대출원리금 납부가 2회 이상 지체됨으로써 2019. 6. 10. 위 채무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. 2024. 6. 4. 기준 대출원리금은 다음과 같다.

1	43,843,491원	31,347,196원	1,191,491원	-	76,382,178원
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

[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~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액 76,382,178원 및 그중 대출원금 43,843,491원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24. 6. 5.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14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보증채무최고액인 8,3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나나